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08 ~ '09년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결과로서, '09년 처분완료된 재정분야 지적사항에 한하여 작성함

□ '09년도 행정안전부(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 경상북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 100억원, 2004년 416억원, 2005년 891억원, 2006년 1,827억원, 2007년 2,499억원, 2008년 1,698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채를 2004년 158억원, 2005년도 95억원, 2006년도 710억원, 2007년도 550억원, 2009년도 250억원을 발행함으로써 잉여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세입추계로 인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자주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에 우리도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세입추계로 잉여재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것임

• 일반회계와 기금, 기금 간 중복 또는 유사하게 예산편성 및 집행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 초래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운영하여함에도
- 경상북도에서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을 중복편성·운용함
- 추후 일반회계와 기금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